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

김 재 윤**

국 | 문 | 요 | 약

이 글에서는 형법상 기업의 형사책임, 특히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다루고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은 지난 20세기에 발전된 개념이다. 기업은 당초 형사책임의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지옥에 떨어뜨려야 할 영혼도, 견어할 수 있는 육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은 범죄행위에 요구되는 주관적 불법구성요소를 형성할 수 없고, 법적으로 가공된 것으로 형벌이 부과될 수도 없다.

그러나 기업의 수는 지난 세기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진정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연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과 건강과 안전의 영역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별개로 형법상 유책한 것으로 적절히 간주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형법은 현재까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 해당 기업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영국에서 형사책임의 부과에 대한 압력은 무엇보다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영국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여러 산업재해는 -특히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사고 및 다양한 철도 충돌사고(Southall, Paddington)-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었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체’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책임법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본 논문 작성에 필요한 광주지방법원의 세월호 제1심 판결문 전문과 서해훼리호 관련 판결문을 제공해 준 이광재 변호사(세월호 선장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변호인)와 광주고등법원 차기헌 재판연구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필자는 이 글에서 기업살인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이해를 제공하고, 기업의 형사책임의 여러 원리들을 재검토하면서 주요한 사례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비록 일부에서는 이러한 비교법적 접근을 지지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결함들을 찾아내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전에 기업살인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쟁을 일으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국회가 기업범죄를 억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재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주제어 : 기업살인, 기업과실치사,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대위책임, 동일성 원리, 집합체의 원리

I. 들어가는 말

2014년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의 방청석에선 “차라리 다 풀어줘라”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재판장이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선장 이모씨에게 징역 36년, 기관장 박모씨에게 징역 30년, 다른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내지 20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¹⁾ 한국사회를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량이 일반국민들, 특히 피해자 유가족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 혐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여 실망감은 더욱 컸으리라 본다. 제1심 재판부는 선장 등 4명이 자신들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조난된 선박 자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2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형법 학자 사이에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세월호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른 아닌 재판부가 청해진해운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대목에 있다. 과연 청해진해운이란 기업²⁾은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게 해양환경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기름유출의 과실책임만을 물어 1천만원의 벌금만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정의(Criminal Justice)에 부합하는 판결인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검찰과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승객을 구조하지

1)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2014고합384(병합) 판결.

2)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9. 2. 24. 설립된 법인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2014년 5월 12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9일 1차 부도 처리되었다.

않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 그리고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유병언 전 회장 개인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이들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청해진해운이란 기업 자체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해진해운이란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선박에 대한 무리한 증개축을 하고, 평형수를 덜어 내고 화물 적재량을 늘려 과적 운행을 관행적으로 일삼았음은 물론, 대다수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안전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소화훈련 세 번과 교육비 54만원이 전부였을 정도로 소홀히 하는 등 청해진해운의 여러 불법행위가 세월호 침몰의 또 다른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승객 304명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로 알려졌다⁴⁾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자녀들에 대한 수사에 함몰된 나머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이란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는 수사 활동을 전혀 펼치지 않았다. 세월호 제1심 재판에서 청해진해운에게 선고된 1천만원이란 벌금도 승객사망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양벌규정)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데에 대한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⁵⁾ 즉 세월호 제1심 재판에서 검

3)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0)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상무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 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박모 해무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하였다(광주지법 2014년 11월 6일자 기사 참조. http://www.gjdream.com/v2/print_fom.html?news_type=201&no=460690 2014.11.17. 최종검색).

4) 그러나 최근 언론사들은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보도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라는 언론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위클리오늘 2014.11.17. 정정보도문: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35> 2014.11.17. 최종검색).

5)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찰이 승객사망에 대한 혐의로 청해진해운을 기소하지 않자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nemo iudex sine actore)’에 따라 이 기업에 대해 승객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범죄자는 선장과 선원이 아니라 청해진해운이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어 개별 행정법규에서 행위자 이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우리나라 형사법제에 의해 진정한 범죄자인 기업은 기소조차 못하는 사법실패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현재의 형사법제가 전면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은 기소되지 않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양벌규정에 의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참담한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발생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영국에서는 수년간 논의 끝에 2007년 7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라 한다)⁶⁾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기업, 경찰조직을 포함한 일정한 공공기관, 조합(partnership), 경영자 협회 등 단체(organisation)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Corporate Manslaughter”, “Corporate Homicide”, “Corporate Killing” 등을 ‘기업살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법인살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영국의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당해 법률이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호기,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연구(II):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3면). 그리고 영국의 2007년 법률상 ‘Manslaughter’는 사망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을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 개념으로 ‘살인’보다 ‘과실치사’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국의 2007년 법률은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약칭하고, 그밖에는 기업범죄에 의한 생명침해를 보다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살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있다.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청해진해운에게 적용할 경우 법원은 청해진해운에게 304명의 승객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어 적어도 연매출액의 10%의 벌금, 공표명령, 구제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영국인인가 한국인인가를 불문하고 언제나 존엄한 가치를 가지는데 다수의 생명을 잃게 한 기업에 대해 형사법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나 상이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은 생명존중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한 헌법국가에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재해(산업재해 포함)에 대해 관련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살인죄를 먼저 도입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보고(Ⅱ),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재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안되고 있는 입법적 노력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Ⅲ).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법과 같은 특별법의 형태가 아니라 형법상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입법상 개혁이 필요함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Ⅳ).

Ⅱ.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평가

1.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이전 기업살인을 둘러싼 영국 판례의 동향

가. 부정기: 20세기 초반까지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 살인죄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범죄로 간주되었다.⁷⁾ 그 근거로는 대체로 ① 살인죄 등의 정식기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심

7) J. Smith에 의하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많은 저서가 살인죄를 “자연인에 의해서 자연인을 살해하는 것(the killing of a human being by a human being)”라고 정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Edward Coke, *Institutes of the Law of England* (1601), p.47; Fitzjames Stephen, *Digest*

리하는 순회재판소(circuit court)에서는 피고인 자신이 법정에 출정할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 ② 당시 판례는 법인이 실행 불가능한 범죄로서 중죄를 인정하고 있어 살인죄는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③ 당시 영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침해를 야기한 무생물(inanimate)이나 동물은 기소되지 않는 한편, 속죄를 위한 몰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에게 공물로서 이용하기 위해 왕에 의한 몰수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살인죄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⁸⁾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가운데 ①과 ②는 기업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던 당시의 일반적 사정을 반영한 것이고, ③은 기업에게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라는 고유한 사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19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변화되었다. 우선 1846년에는 속죄를 위한 몰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1925년에는 형사재판법 제33조에 의해 순회재판소에서의 법정대리인의 출정이 인정됨으로써 앞의 ①과③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판례는 여전히 “기업은 그 성질상 살인죄를 실행할 수 없다”⁹⁾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¹⁰⁾

나. 요람기: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영국은 1944년부터 판례를 통해 ‘동일성 원리(principle of identification)’¹¹⁾가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해 주관적 불법구성요건(mens rea)을 성립요건으로

of the Criminal Law (1st ed., 1877), Art. 218; *Halsbury's of the Criminal Law* (1st ed., 1909), p.590 등을 들 수 있다(John Smith, “Comment on R v P.&O. European Ferries (Dover) Ltd.”, [1991] CrimLR 697, p.698).

8) Smith, *supra* note 7, pp.701-702.

9) *Cf. Queen v Great North of England Railway Co.* [1846] 9 QB 315, 326.

10) 川崎友巳,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347-348면.

11) 동일성 원리란 일정한 법인 구성원의 범죄행위를 곧 법인의 범죄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인의 구성원을 두뇌에 해당하는 자와 수족에 해당하는 자로 나누고,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법인의 경영진(directing mind)의 귀책사유와 행위는 곧바로 법인의 귀책사유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영진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곧 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Richard Card, *Card, Cross and Jones: Criminal Law* (15th ed., 2001), at para. 20.52; J.C.Smith, *Smith & Hogan Criminal Law* (10th ed., 2002), p.202; 김호기, 앞의 보고서(각주 6), 88면).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당연히 살인죄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이렇게 하여 이론적으로는 기업에게도 살인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에 있어 기업에게 살인죄의 적용이 문제가 된 1965년 Northern Star Mining 건설사 사례¹²⁾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 기업인 Northern Star Mining 건설사는 노후화한 철교의 해체 공사를 하청 받았지만 해체작업 중 철교가 붕괴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용접기사가 익사하였다. 이에 대해 Northern Star Mining 건설사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본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Northern Star Mining 건설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법정변호사뿐만 아니라 법관도 살인죄로 해당 기업의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어떠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변호인도 기업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를 실시했다고 여겨진다.¹³⁾ 이와 같이 판례는 이론적으로 기업에 대해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40년대 이후 이론적으로는 기업에게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적용 여부가 재판에서 다투어졌던 Northern Star Mining 건설사 사례 이후 20년 이상 그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없었다. 이와 같이 Northern Star Mining 건설사 사례 이후 기업살인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로 ① 기업에게 살인죄를 부과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높지 않았다는 점, ② 기업에게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로 적용하려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실무관계자가 많았다는 점 등¹⁴⁾이 지적되고 있다.¹⁵⁾

12) *Northern Star Mining Construction Co. Ltd.*, The Times, 1 February 1965, pp.2-3 and 5.

13) The Times, 1 February 1965, p.2. 그리고 Smith, *supra* note 7, p.697; Law Commission, *Legislating the Criminal Code: Involuntary Manslaughter* (1996), Law Com No 237, at para. 6.41.

14) Celia Wells, "Law Commission on Involuntary Manslaughter: (2) The Corporate Manslaughter Proposals: Pragmatism, Paradox and Peninsurity", [1996] CrimLR 545, p.546.

15) 川崎友巳, 앞의 책(각주 10), 348-349면.

다. 발전기: 1980년대 후반 이후

(1) 발전기 도래의 배경

이와 같이 1980년대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기업에게 살인죄의 적용은 이론상 문제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적용된 예는 없었다. 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낮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여 기업에게 살인죄의 적용 여부가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의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언급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공공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인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어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 지하철 King’s Cross역 화재사고로 31명이 사망, 1988년 북해 Piper Alpha 유정굴착기지 폭파사고로 167명이 사망, 그리고 1989년 Thames강에서 레저보트와 준철선의 충돌사고로 레저보트 승객 51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후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재해는 회피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관리자의 과실이나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 등이 중첩되어 발생하였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King’s Cross역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소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Piper Alpha 유정굴착기지 폭파사고에서도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더욱이 1989년 Thames강 레저보트의 충돌사고에서도 검찰청장의 명령에 의해 기업에 대한 기소는 중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을 배경으로 영국에서는 기업이 관련된 대규모 공공재해에 대해 기업의 형사책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¹⁶⁾

둘째,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심각한 실태가 밝혀졌다.¹⁷⁾ 예를 들어 영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에서 1983년부터 10년간 5,774명이 근로 중에 사망하였고, 1992/1993년도에는 1년간

16) David Bergman, “A Killing in the Boardroom” (1990), 3 New Statement and Society 15, pp.15-16; Celia Wells, *Negotiating Tragedy : Law and Disasters* (1995), pp.157-182.

17) Celia Wells, *Corporation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1993), pp.40-41; C.M.V. Clarkson & H.M. Keating, *Criminal Law : Text and Materials* (5th ed., 2003), pp.247-248; C.M.V. Clarkson, “Kicking Corporate Bodies and Damning Their Souls” (1996), 59 MLR 557, p.558.

379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에 직장 내에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28,924명이었다고 한다.¹⁸⁾ 게다가 다양한 직업상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영국 국내만으로도 매년 약 1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인 예측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대부분이 기업의 적절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실시에 의해 회피 가능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⁰⁾ 그리고 이 중 1972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²¹⁾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기소된 사안은 40%에 달하나, 기소된 대부분은 약식기소 절차가 이용되어 낮은 벌금에 의해 처리되었다.²²⁾

이러한 종래의 대응에는 사회적인 요구와의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기업의 관리 소홀을 단순히 1972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단속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살인죄라는 무거운 범죄로 파악함으로써 검찰이 단속하여 그 책임을 기업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었다.²³⁾

(2)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살인에 대한 영국 형사법의 대응을 재검토하는 전환기가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²⁴⁾가 그것이다. 본 사건은 1987년 3월 6일 오후 7시 P&O European Ferries社 소유의 여객선 Herald of Free Enterprise호가 벨기에의 제브뤼헤(Zeebrugge) 항구를 떠나 영국의 도버(Dover)항으로 출하였으나, 뱃머리 부분에 위치한 선수문을 연 채로 출항하여

18) C.M.V. Clarkson, *Criminal Law : Text and Marerials* (3d ed., 1994), p.558.

19) David Bergman, *Deaths at Work: Accidents or Corporate Crime* (1991), p.3.

20) Health and Safety Executive, *Blackspot Construction : A Study of Five Years' Fatal Accidents in the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Industries* 4 (1988).

21) 이에 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 전형배, “영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시사점”, 노동법논총 제20집, 2010, 349면 이하 참조.

22) Bergman, *supra* note 19, p.35.

23) Wells, *supra* note 17, pp.5-8.

24) P&O European Ferries (Dover) Ltd. Case (1991) 93 Cr. App.R. 72, 73.

항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침수·침몰하여 총 459명의 승객 중 19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사안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선수문의 개폐를 임무로 하는 부갑판장(*assistant bosun*)이 선실 침실에서 취침 중이었으며, 선수문의 개폐 확인의 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officer*)도 그 확인을 게을리 한 데 있었지만, 진정한 원인은 Ferries社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데 있었다. 즉 함교에서 선장에 의해 선수문의 개폐를 확인하는 방법도 없었고, 선수문의 개폐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원들에게 고지하는 안전 정책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원이나 위 Ferries社의 이사들과 함께 P&O European Ferries社 자신에 대해서도 살인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본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검시관(*Coroner*)은 “본 사건은 자연인에 대해 살인죄를 논하는 사례는 아니고, 기업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사망원인을 심문하여 이러한 결론을 무시하고 본 사건이 불법인 죽음(*unlawful death*)을 야기한 사례라는 평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유족들에 의해 검시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기업도 살인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동일시 가능한 상급관리자에게 살인죄의 *mens rea*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시관의 결정을 지지하여 유족들에 의한 불복신청의 제기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소송 경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이 모아져 1990년 검찰청은 7명의 관계자(이 중 적어도 2명이 법인과 동일시 가능한 관리자이다²⁵⁾)와 함께 P&O European Ferries社를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제1심 법원(예심법원)의 Turner J. 판사는 영국 형법은 기업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실시하고 있지만,²⁶⁾ 최종적으로 기업과 동일시 가능한 사람 가운데 여객선의 출항 당시 “명확하고 중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 살인죄의 *mens rea*를 충족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5명의 이사나 선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아가 검찰청은 남은 2명의 선원(부갑판장과 항해장)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기소를 취하하였다.

25) Wells, *supra* note 17, p.69.

26) (1991) 93 Cr. App.R. 72.

그 결과 P&O European Ferries社에게 아무런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채 본 사건은 종결되었다.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는 공적 기관의 사고조사에 의해 위 회사의 안전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형사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당시 영국 판례의 한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판결로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급관리자가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생명의 위험을 인식하는 데에 많은 곤란을 겪게 하고, 설사 상급관리자가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생명의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이 입증하기에는 넘을 수 없는 증거 장벽이 놓여 있다. 이는 현실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문제는 있지만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에서는 기업과 동일시 가능한 복수의 상급관리자의 실수나 과실을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 기업의 mens rea를 인정하는 ‘집합체의 원리(principle of aggregation)’가 검찰로부터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²⁷⁾²⁸⁾

2. 2007년 기업살인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가. 2007년 기업살인법의 제정 배경

영국에서는 P&O European Ferries社 판례를 계기로 영국 형법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제안서 제135호 「형법 - 비고의살인죄」(1994)와 이 제안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표된 보고서 제237호 「형법 전의 입법화 - 비고의살인죄」(1996년)가 마련되는 등 일련의 개혁적 노력이 진행되

27) Stanley and Others 19 October 1990 (CCC No 900160) unreported transcript, 8G-9C; Law Commission, *Criminal Law: Involuntary Manslaughter* (1994),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135, at paras. 4.31-4.37; *H.M. Coroner for East Kent, ex p Spooner* (1989), 88 Cr App RIO, 16.

28) 川崎友巳, 앞의 책(각주 10), 349-352면.

었다.²⁹⁾ 동일성 원리를 전제로 한 기업의 형사책임으로는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에서 표면화된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여러 대형재해에서 나타나듯이 복잡한 다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그 관리시스템의 미비나 조직구조상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기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의 상급관리자가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기업 활동의 위험성 모두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성 원리에 따라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난점이 존재한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가 제정되기 이전에 살인죄로 유죄가 선고된 몇몇 기업은 기업 내에서 과실이 있는 종업원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손쉬운 소규모 영세기업에 지나지 않았다.³⁰⁾ 이에 영국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동일성 원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 적용되는 살인죄의 유형으로 ‘기업살인죄(corporate killing)’의 신설을 제안하였다.³¹⁾ 영국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비고의살인죄 법률 초안(Bill of Involuntary Homicide Act 1995)’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은 (a) 기업에 의한 관리상 과실이 타인의 사망의 결과의 원인 또는 원인의 하나인 경우, (b) 그 과실이 당해 행위상황에서 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에 훨씬 밑도는 경우에 기업살인죄(corporate killing)를 범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업살인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³²⁾

이러한 영국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기업살인죄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내려졌다. 즉 사회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업의 실태에 적절한 이론구성이라고 하여 지지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³³⁾ ① 기업살인죄의 신설은 기업의 이어나 상급관리자 등 사망의 결과에 책임이 있는 자연인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범감정에 부합하지 않고,³⁴⁾ ②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그 조직구조나 관리시스템의 세

29)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의 제정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정진우,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3, 375-379면 참조.

30) 주목할 만한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 제정 이전의 사례로는 R. v Kite [1996] 2 Cr. App. R. (S.) 295 CA (Crim Div) 참조.

31) *Ibid.*, at paras. 8.1-8.35.

32) *Ibid.*

33) Law Commission, *supra* note 13, at para. 7.7.

34) *Ibid.*, at para. 5.35; A. McColgan,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Document on Involuntary Manslaughter - Heralding Corporate liability?”, [1994] Crim LR 547, p.551; Paul Matthews,

부적 사항에 대해 수사를 요구함은 물적·인적인 측면에서 검찰의 능력을 넘어 서는 것으로 현실성이 부족하고,³⁵⁾ ③ 관리시스템의 미비나 조직구조상 결함을 원인으로 한 기업의 형사책임을 기업살인죄의 경우로 한정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며,³⁶⁾ ④ 기업살인죄의 성립요건이 불명확하다³⁷⁾는 비판적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업살인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던 가운데 영국 정부는 2000년 「비고의살죄에 관한 법률개정: 정부 제안」을 발표하여 기본적으로 1996년 법률위원회의 입법 제안에 따른 ‘기업살인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다만,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적용대상인 범죄의 주체를 법인격 없는 단체에까지 확대한 점³⁸⁾이나 기업의 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³⁹⁾은 1996년 법률위원회에 의한 제안과 다르다).⁴⁰⁾ 이 입법 제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⁴¹⁾ 2006년 영국 정부는 기업살인죄를 입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은 많은 토의를 거쳐 2007년 7월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란 이름으로 입법화된 후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대형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기업살인죄의 입법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

“Involuntary Manslaughter: A View from the Coroner’s Court” (1996), 60 Journal of Criminal Law 189, p.198; David Bergman, “Weak on Crime - Weak on Cause on Crime” (1997), 147 NLJ 1652, p.1652 and 1665.

35) Matthews, *supra* note 34, p.199.

36) Wells, *supra* note 14, p.553.

37) *Ibid.*, pp.552-553.

38) Home Office, *Reforming the Law on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 (2000), at para. 3.2.

39) *Ibid.*, at para. 3.4.

40) News, “DPP Backs Campaign for ‘Corporate Killing’ Law” (2000), 144 Solicitors Journal 433, p.433; News, “Straw Unveils Corporate Killing Plans”, 144 Solicitors Journal 481, p.481; Michael Elliker, “Health & Safety update” (2000), 144 Solicitors Journal 777, pp.777-778; David Wenham, “Recent Developments in Corporate Homicide” (2000), 29 Industrial Law Journal 378, pp.381-385; Michael Allen, “Health and Safety Update” (2001), 145 Solicitors Journal 1105, p.1105.

41) News, “Corporate Killing Plans ‘Laudable But Flawed’” (2000), 144 Solicitors Journal 1111, p.1111.

체들의 목소리⁴²⁾를 계속해서 무시하기는 어려웠으며,⁴³⁾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바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다.⁴⁴⁾

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내용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이 법률 제1조는 “기업 등의 운영 내지 조직방법(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and organised)의 실패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운영방법의 실패가 상급관리자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기업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업과실치사죄를 범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기업 등의 단체(organisation)로 제한된다. 이때 단체의 의미는 제1조 제2항에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당연히 기업과실치사죄의 주체인 단체에 포함된다. 나아가 경찰조직(police force)은 물론이고 동 법률에 첨부된 목록 1(Schedule 1)에서 열거된 공공기관 역시 기업과실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밖에도 조합(partnership), 노동조합(trade union)과 경영자협회(employers' association) 역시 그들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한 기업과실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경찰조직, 조합, 노동조합 등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제25조에 정의되어 있다.⁴⁶⁾

42) Comment, “Hobson’s choice” (2000), Solicitors Journal, 14 January 6, p.6; News, “Dismore Calls for New Offence of ‘Corporate Homicide’” (2000), 144 Solocitours Journal 407, p.407; Lucy Hickman, “Corporate Killing Reform” (2001), 151 NLJ 912, p.912; Helen Walker, “Criminalising Companies-Will Corporate Killing Make a Difference” (2001), 151 NLJ 1494, pp.1494-1495; Patrick Allen, “Corporate Manslaughter” (2002), 146 Solicitor Journal 698, p.698; News, “No-Go for Corporate Killing Law” (2002), 146 Solicitors Journal 1047, p.1047.

43) S. Trotter는 회사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는 ‘안전관리이사’(safety director)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안전성에 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Stephanie Trotter, “Safety and Profit” (1999), 149 NLJ 1279, p.1279; Stephanie Trotter, “The Padding ton Rail Crash” (1999), 149 NLJ 1505, p.1505; Stephanie Trotter, “Corporate Manslaughter” (2000), 150 NLJ 454, p.455].

44) 川崎友巳, 앞의 책(각주 10), 352-357면.

45) 이하 김호기, 앞의 보고서(각주 6), 114-125면; 심재진,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과 그 시사점”,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83-87면; 정진우, 앞의 논문(각주 29), 379-380면 참조.

둘째, 기업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실패를 의미하는 운영 내지 조직방법의 실패가 기업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때 주의의무란 제2조 제1항에서 예시된 것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의 과실법(law of negligence)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으로 상급관리자에 의한 당해 기업 등의 운영실패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성립요건으로서 중과실 대신 운영실패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동일성 원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동일성 원리에 따르면 기업 등을 중과실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즉 어느 특정한 상급관리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상급관리자에 대하여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동일성 원리를 적용하여 기업을 중과실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중과실 대신 운영실패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운영실패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자의 귀책사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기업의 내부에 적절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내지 기업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의 여부 등에 의해 판단된다. 그리고 운영실패가 인정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운영실패가 상급관리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급관리자란 기업 활동 전반 내지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기업 활동 전반 내지 중요한 부분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것을 조직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동 법률 제

46) 따라서 노동계에서 2007년 기업과실치법을 외국 입법례로 소개하면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으로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기업살인죄’ 법률안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 법률의 여러 행위주체 가운데 기업만을 강조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대표적으로 이태경,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받다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계간 노동과 건강, 2012년 봄호 참조. <http://laborhealth.or.kr/30600> 2014.11.20. 최종검색).

1조 제4항(c)].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이 운영실패가 상급경영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관리자가 아니라 하위관리자의 운영실패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상급관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그러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기업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급관리자의 운영실패로 인하여 당해 기업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위반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란 의무의 이행정도가 당해 행위상황에서 기업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에 훨씬 밑도는 경우를 의미한다[동 법률 제1조 제4항(b)].

다섯째,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즉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사망자가 반드시 기업 등의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면 제3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입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사건들에서처럼, 또 세월호 참사처럼 열차나 선박 등의 운행으로 승객이나 행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섯째, 사망의 결과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판단은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업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상한 없는 벌금, 구제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의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으로 처벌될 수 있다. 우선, 기업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벌금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동 법률 제1조 제6항). 중요한 점은 벌금의 비용이 보험에 의해 충당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은 법에서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형사벌금의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시행할 수 없다. 기업에게 부과된 벌금이 엄청나게 큰 액수일 경우 조직체가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⁴⁷⁾ 다음으로, 법원은 제1조가 규정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으로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문제, 위 위반행위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정책, 시스템 또는 관행의 문제점으로서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것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구제명령은 운영실패가 재판 기간 내에 구제되지 않은 경우와 그러한 실패가 “충분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⁴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한 없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⁴⁹⁾ 끝으로,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사항, 부과된 벌금액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사항 등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한 없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명령과 공표명령은 기업과실치사의 소송에서만 유용하며 제지와 징벌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⁵⁰⁾

3.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사례와 평가

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사례

영국에서 매년 평균 196명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규제영향평가는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해 성공적 기소가 10건에서 13건 이상에 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⁵¹⁾ 실제로 2008년

47) Sarah Field/Lucy Jones, “Five Years On: The Impact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lus ç change?” (2013), *International Company and Commercial Law Review* 239, p.242.

48)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SGC), “Corporate Manslaughter and Health and Safety offences causing death”, 2010, at para.35.

49) Sarah Field/Lucy Jones, *supra* note 47, p.242.

50) *Ibid*, p.242.

51) Home Offic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Bill* (London: Home Office, 2006).

4월 6일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시행된 이래 사업장에서 사망의 결과로 104건이 기소되었으나(대부분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법률에 의해 단지 3건만이 유죄로 선고되었다.⁵²⁾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2월 17일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CGH)는 영국에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법에 의한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된 최초의 기업이다.⁵³⁾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27세의 젊은 지질학자인 Alexander Wright는 작업 중 3.8미터 아래 구덩이에서 지반침하로 질식사했다. 이 젊은 청년이 2년 반 동안 일했던 CGH는 1992년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1.2미터 보다 더 깊은 구덩이의 경우 말뚝 또는 지지대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지침을 사망한 젊은 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굴속에서 작업을 한다면 한 사람은 지상에서 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구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⁵⁴⁾ 이 판결에서 사업장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불필요하게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게 385,000 파운드(연매출액의 250%, 한화 약 6억7천3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피고 기업의 벌금과 유죄선고에 대한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⁵⁵⁾

두 번째로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된 기업은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JMW Farms Ltd이다. 2010년 11월 15일 JMW Farms 회사가 운영하는 돼지사육농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Robert Wilson이 지게차(forklift)의 지게가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떨어진 금속 쓰레기통에 맞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2년 5월 Belfast's Langanside 지방법원은 JMW Farms 회사에 대해 유죄답변(guilty pleas)을 고려하여 187,500 파운드(연매출액 1백만파운드, 한화 약 3억2천8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⁵⁶⁾

52) 이하 Sarah Field/Lucy Jones, *supra* note 47, pp.241-242.

53) Peter Eaton 대표이사(61세)도 중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P. Eaton에 대한 기소는 그의 건강상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만이 유일한 피고인으로 남았다.

54)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107_11/ 참조(2014.11.20. 최종 검색).

55)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2011] EWCA Crim 1137; [2012] 1 Cr. App. R. (S.) 26.

56) R v JMW Farms [2012], Belfast Crown Court, NICC 17.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http://www.pannon>

2008년 5월 29일 회사의 작업장 지붕에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올라간 근로자 Stephen Berry가 취약한 지붕채광창(fragile roof panel) 속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안으로 2012년 7월 3일 Lion Steel Ltd가 영국에서 세 번째로 기업과 실치사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⁵⁷⁾ 흥미로운 것은 이 기업은 앞서 언급한 다른 두 기업과 달리 중간 규모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2007년 기업과 실치사죄법에서 “상급 관리자”와 “기업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적 관리 또는 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료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떠한 것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이 이 기업에 대해 2007년 기업과 실치사죄법과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2조와 제33조), 2005년 사업장 고공안전규정(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위반으로 각각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판사가 잠시나마 기업과 실치사죄를 검토했을 뿐 재판은 기업에 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3명의 이사들(directors)에 대해서는 보통 법상 중과실치사죄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진행되었다. 재판도중 배심원심리전의 판사결정(‘half-time’ submission of no case to answer)을 통해 이사 1명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또 다른 1명은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상태였다. 위 결정 이후 피고인과 검찰 사이에 유죄답변(guilty pleas)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Lion Steel 회사가 기업과 실치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사들에 대한 나머지 기소는 모두 취하(dropped)되었다. 판사는 혐의를 인정한 점, 회사가 142명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600,000 파운드 벌금을 20% 감액하여 480,000 파운드(한화 약 8억4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⁵⁸⁾

e.com/media-centre/blog/health-and-safety-blog/jmw-farms-northern-ireland-corporation-guilty-of-corporate 참조(2014.11.20. 최종검색).

57) 이에 대해 자세히는 <http://www.bbc.co.uk/news/uk-england-manchester-13993270> 참조(2014.11.20. 최종검색).

58) 이에 대해 자세히는 <http://www.lawgazette.co.uk/in-practice/practice-points/corporate-manslaughter> 참조(2014.11.20. 최종검색).

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평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공공재해’는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재해예방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상당한 범죄억지력을 발휘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⁹⁾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은 기업의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합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안전기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⁶⁰⁾ 이에 J. Gobert는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 과실의 독특한 성격과 기업의 성질을 이해하려는 정부의 가장 진지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⁶¹⁾ 실제로 2012년에는 63건의 새로운 기업과실치사 소송이 개시되어, 2011년의 45건과 비교할 때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²⁾

그러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이 법률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앞서 언급한 3건의 최근 승소 건에서 잘 드러난다고 하여 부정적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기업의 과실에 근거하여 발생한 공공재해, 산업재해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다시 새롭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3건의 소송 모두에서 관련 이사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다투는 대신 기업책임만을 묻고 있어 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우선순위 및 가치를 결정한 상급관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고 있는

59) Law Commission(1996), Report 237.

60) N. Gunningham and R. Johnstone, *Regulating Workplace Safety: Systems and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1999).

61) J. Gobert, “Corporate Killing at Home and Abroad: Reflections on the Government’s Proposals” (2002), *Law Quarterly Review* 118, pp.72-97, p.74.

62) P. Almond/R. Arthur, “업무상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영국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10월호, 44-45면, 53면.

것은 문제라고 한다.⁶³⁾ 두 번째 문제로는 Lion Steel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동법에서 사용하는 상급관리자라는 집단의 범위에 대한 개념적 불명확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잡한 경영구조로 이루어진 대기업의 경우 상급관리자의 여러 주의의무들을 구분하기 위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기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안전 관련 주의의무가 하위 직원들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상급관리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 특정한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세 번째 문제로는 기업과실치사 관련 소송의 결과는 전혀 급진적이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와 JMW Farms 회사는 1인 이사가 운영하는 소기업이었음 고려할 때, 이들 회사에 대한 기소는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전의 법리와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죄판결을 성공적으로 얻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⁶⁴⁾ 그리고 이들 두 회사와 달리 Lion Steel 회사가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유죄답변 협상에 따른 혐의 인정으로 상급관리자의 요건이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심사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이에 D. McClusky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설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테스트는 안전보건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이미 주장하는 복수의 이사들이 있는 대기업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것이다”⁶⁵⁾ 라고 보고 있다.⁶⁶⁾

63) J. Gober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2008), *Modern Law Review* 71(3), p.418.

64) N. Cavanagh,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 Assessment of the Models of Fault” (2011), *Journal of Criminal Law* 75(5), pp.414-440.

65) D. McCluskey, “Legal Update: Corporate Manslaughter” (2011.3), *Law Society Gazette*, pp. 16-17.

66) P. Almond/R. Arthur, 앞의 논문(각주 62), 53-55면.

Ⅲ. 대형재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해는 물론이고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⁶⁷⁾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법적 대응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방식, 관련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를 특별법 형식으로 마련하는 방식, 그리고 이 두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이라 한다)은 특례법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으나, 기존의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까지 상향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고, 2014년 11월 3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기업 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은 특별법 형식으로 기업 경영진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냈을 경우 기업 자체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대응방식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2013년 4월 24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강문대 변호사가 제안한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고 기존 사업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방식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대형재해와 개인 차원이 아닌 정부기관 차원에서 제안된 내용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앞의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⁶⁸⁾

6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보면 2009년 1,916명, 2010년 1,931명,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이며, 2013년 한해만 보더라도 하루에 5.3명의 근로자가 일터로 나갔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참조. 2014.11.21. 최종 검색).

68) 다만 강문대 변호사가 제안한 입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강문대,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실태 및 특별법 제정 방안”,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34-43면 참조. 이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으로는 김가람, “산재사망 특별법 제정, 산재사고는 범죄라

1. 개인처벌 강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가.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이, 과거 다수인의 생명 침해결과를 야기한 중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왔음”을 지적하면서, “다수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불법 및 책임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경합범 규정 및 유기형의 상한 등의 개정이 절실함”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 특례법안이 시행되면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⁶⁹⁾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특례법안에서 “다중인명피해범죄란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동 특례법안 제2조), “선장, 기장 등의 과실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침몰, 추락하여 수백 명이 사망한 경우는 물론, 폭탄을 던져 수십 명을 살해하거나 수회에 걸쳐 다수를 죽인 연쇄살인범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단, 사형, 무기형 제외)하여 “최대 100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유기형을 상향하는 한편(동 특례법안 제4조, 제5조, 제6조), 법률상 감경의 경우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강화하고(동 특례법안 제7조),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40년”으로 강화(동 특례법안 제8조)하여 규정하고 있다.⁷⁰⁾

는 사회적 여론에 기여할 것”,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120-125면 참조.

69) 법무부, “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2014.6.3. 법무부 보도자료 1-2면.

70) 법무부, 앞의 보도자료(각주 69), 2-3면.

나. 문제점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은 법안 자체에 내포된 형법 이론상 문제는 물론이고 이 법안이 기대하고 있는 대형재난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첫째,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은 다중인명피해범죄를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예컨대 연쇄살인범인이 3명을 살해한 경우, 강도강간범이 부녀 4명을 강간 후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택시운전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경우, 작업현장에서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여 4명이 사망한 경우(2011년 12월 세진중공업 폭발사건) 등 2명 이상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모든 사건이 다중인명피해범죄가 되어 이 특례법안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건들이 다중인명피해범죄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인지, 법문 그대로 다중인명피해범죄로 보아 최장 100년까지의 형벌로 위협하는 것이 21세기 문명국가에서 합리적 이성에 토대를 둔 법안인지 일차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형법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란 측면에서 고의범과 과실범을 엄격히 구별하고 그에 따른 형벌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별법안은 양자를 하나로 묶어 접근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승객 300여명 전원을 사망케 한 어느 테러범에게 이 특별법안을 적용하여 9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그가 처음부터 다수의 승객을 살해할 의도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이 창출되었으며,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승객이 사망하였음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하다는 결과만 동일할 뿐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는 과실범을 고의범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선 예의 항공기 테러범과 달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과 같은 대형재난은 주로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고의범과 같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 의도하여 창출하는 위험과 비교하여 볼 때 위험창출 과정이나 위험지배 구조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⁷¹⁾ 셋째,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은 김호기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재난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중하

게 처벌함으로써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정 개인에 대한 형벌강화 방식으로 재난예방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다.⁷²⁾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과 같이 “재난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개인을 형사처벌하거나, 그에게 부과되는 형을 가중한다고 하여도 이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대형재난은 당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벽 모두가 실패한 경우에, 즉 시스템의 위험관리 그 자체가 실패한 경우에 비로소 현실화하게 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한 영역에 대하여서만 지배가능성을 보유한 개인에게 시스템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재난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⁷³⁾ 마지막으로,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은 다중인명피해를 야기한 대형재난의 책임을 오직 행위자 개인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대형재난의 작·간접적인 원인제공은 기업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는 문제를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당 기업인 청해진해운은 제한연령을 초과한 오래된 선박의 수입 운행,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선박 구조의 무단 중 개축, 기업의 이윤추구에 함몰된 나머지 관행화된 과적운행, 구명장비의 결함 여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인명구조와 관련된 미흡한 안전교육과 훈련 등 참사의 작·간접적인 원인된 여러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에게 아무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진정한 거대 범죄자는 놓아 둔 채 힘없는 작은 범죄자만 엄벌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영국에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왜 제정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71) 김호기,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102면.

72) 김호기, 앞의 논문(각주 71), 108면 이하 참조.

73) 김호기, 앞의 논문(각주 71), 108, 118면.

2. 기업처벌 인정: 대검찰청의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

가. 도입의 배경과 주요내용

정부도 기업의 과실로 인하여 대형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 이외에 어떠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업책임법(가칭)’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대검찰청은 2014년 11월 3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의 도입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형사법학회 등에 기업책임법 도입 및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⁷⁴⁾ 대검찰청은 “기업의 이윤추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업 자체에 독립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관리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의 결과를 기업 자체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파급력이 심각한 기업의 대형안전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도입함이 타당”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제안한 기업책임법(가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등 상위경영진에 의해 관리되고, 구성된 활동으로 사람의 사상을 초래하거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사상의 결과에 대해 기여한 경우, 기업의 구성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이때 “기업 등 상위경영진은 조직의 경영활동을 하며, 총괄적으로 중요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조직경영 및 활동에서 실제적인 총괄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주의의무는 근로자 등 기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재화나 서비스의 조직에 의한 공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로 “벌금형의 상한을 1년 매출의 일정액(예를 들어 2.5%~10%)으로 설정

74) 시사포커스 2014년 11월 3일자 기사 참조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61> 2014.11.21. 최종검색).

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⁷⁵⁾

나. 문제점

대검찰청의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동안 형법학계의 일부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하나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책임법(가칭)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으나, 전체적인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즉 기업책임법(가칭)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나, 이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대륙법계의 오랜 전통인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라는 법인에 따라 기업, 정확히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 부정하고 다만 양벌규정에 의해 수형능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국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한 것은 이미 영국에서는 19세기부터 법인의 형사책임을 판례상으로 대위책임과 동일성 원리에 따른 법인 고유의 자기책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인정해 오고 있던 전통에 바탕을 둔 것으로,⁷⁶⁾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책임형법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따라서 형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기업책임법(가칭)이란 특별법을 통해 기업 활동으로 사람의 사상의 초래하거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상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경우 기업(법인)에 의한 환경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의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75) 대검찰청, 기업책임법 도입 제안서, 55면.

76) 이에 대해 상세히는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250-251면; 김호기, 앞의 보고서(각주 6), 78면 이하;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50면 이하 참조.

3. 소결

생각건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향후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재난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 관련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대형재난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과 형법이론 및 외국법제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단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전자의 특례법안에 의해서는 기업에게 재난예방에 필수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형재난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직접행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의 여러 탈법적인 행태가 누적되고 안전과 관련된 위험관리체계의 실패, 관리시스템의 미비, 조직구조상 결함 등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직접행위자 개인에게만 강력하게 묻고 또 다른 진정한 범죄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자의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은 영국과 달리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 부인하는 형법이론과 정면으로 상충되어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 내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서는 성안될 수 없는 법안이다.⁷⁷⁾

따라서 향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같이 그 책임을 특정행위자에게만 묻는 방식이 아닌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사법과 유사하게 또 다른 진정한 범죄자인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입법형식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특별법 형식으로서 기업책임법(가칭)이 아니라 형법이론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형법전에 법인처벌의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하

77) 이와 달리 김종구 교수는 “비록 국내의 다수설과 판례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입법자의 결단으로 자연인과 연계하지 않고 법인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김종구, “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법학연구 제55집, 2014, 85면).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자의 결단도 기본법인 형법이론의 토대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특별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등등의 문제를 야기할 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다고 본다.⁷⁸⁾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서 형법전에 범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기업형벌로서 벌금, 보안처분, 구제명령, 공표명령 등 기업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사제재를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형재난과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환경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전형적인 기업범죄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⁷⁹⁾

물론 형법전에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형사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의 실제 적용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기소되지 않고 영세한 소규모 기업만이 기소되어 처벌됨으로써 기업의 과실이 개입된 대형재난이나 경제범죄 등 기업범죄가 실효적으로 예방될 수 없을 것이란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법의 실제 운영의 문제가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진정한 범죄자로 여겨지는 대형재난이나 기업범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도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기업을 위해 행동한 자연인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전가시키고 기업은 무소불위의 기업권력을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본다.

IV. 맺는 말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7달이 흘러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잊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어느새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은 누구에게 있고, 관련 책임자들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례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지, 향후 이러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법제를 강화하였는지가 그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처벌

78) 이미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형법전에 법인처벌의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김재윤, 앞의 책(각주 76), 255-264면 참조.

79) 법인처벌규정의 형법전예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윤, 앞의 책(각주 76), 280-287면 참조.

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은 중대한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이란 기업에 대해 304명의 승객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수사 활동도 펼치지 않았으며, 단지 기름유출의 과실책임만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을 뿐이고, 제1심 법원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청해진해운에게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과실에 의해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정한 범죄자로서 기업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상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의 진정한 범죄자는 다름 아닌 청해진해운과 같은 기업이라는 인식 아래 이러한 대형재난을 야기한 기업에게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형재난과 산업재해 등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해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상한 없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최근 정부에서 대형재난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야기한 행위자에게 100년까지 유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기업책임법(가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특례법안은 다중인명피해범죄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고의범과 과실범을 동일선상에 묶어 다루고 있다는 점, 대형재난은 특정 개인에 대한 형벌강화 방식만으로는 결코 예방될 수 없다는 점, 대형재난에 대한 진정한 범죄자로서 기업에게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기업책임법(가칭)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그것도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사상의 결과에 국한하여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나, 이는 일반법인 형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과실에 기인한 대형재난, 특히 개인에게 환원시킬 수 없는 기업의 위험관리체계의 실패, 관리시스템의 미비, 조직구조상 결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형

사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책임법(가칭)과 같은 특별법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형법전에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기업형벌로서 벌금, 보안처분, 구제명령, 공표명령 등 기업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형사입법상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문대,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실태 및 특별법 제정 방안”,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 김가람, “산재사망 특별법 제정, 산재사고는 범죄라는 사회적 여론에 기여할 것”,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 김종구, “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법학연구 제55집, 2014.
-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김호기,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연구(Ⅱ):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_____,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0.
- _____,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 심재진,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과 그 시사점”,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 이태경,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받다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계간 노동과 건강, 2012년 봄호.
- 정진우,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3.
- P. Almond/R. Arthur, “업무상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영국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10월호.

〈국외문헌〉

川崎友巳,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David Bergman, *Deaths at Work: Accidents or Corporate Crime* (1991).

Richard Card, *Card, Cross and Jones Criminal Law* (15th ed., 2001).

C.M.V. Clarkson & H.M. Keating, *Criminal Law : Text and Materials* (5th ed., 2003).

C.M.V. Clarkson, *Criminal Law : Text and Materials* (3d ed., 1994).

Health and Safety Executive, *Blackspot Construction : A Study of Five Years' Fatal Accidents in the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Industries* 4 (1988).

Home Office, *Reforming the Law on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 (2000).

Home Offic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Bill* (London: Home Office, 2006).

John Smith, *Smith and Hogan Criminal Law* (10th ed., 2002).

Celia Wells, *Corporation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1993).

Celia Wells, *Negotiating Tragedy : Law and Disasters* (1995).

Michael Allen, "Health and Safety Update" (2001), 145 Solocitors Journal 1105.

Patrick Allen, "Corporate Manslaughter" (2002), 146 Solicitor Journal 698.

David Bergman, "A Killing in the Boardroom" (1990), 3 New Statement and Society 15.

David Bergman, "Weak on Crime - Weak on Cause on Crime" (1997), 147 NLJ 1652.

N. Cavanagh,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 Assessment of the Models of Fault" (2011), Journal of Criminal Law 75(5).

C.M.V. Clarkson, "Kicking Corporate Bodies and Damning Their Souls" (1996), 59 MLR 557.

Comment, "Hobson's choice" (2000), Solicitors Journal, 14 January 6.

- Michael Elliker, "Health & Safety update" (2000), 144 Solicitors Journal 777.
- Sarah Field/Lucy Jones, "Five Years On: The Impact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lus ç change?" (2013), International Company and Commercial Law Review 239.
- J. Gobert, "Corporate Killing at Home and Abroad: Reflections on the Government's Proposals" (2002), Law Quarterly Review 118.
- J. Gober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2008), Modern Law Review 71(3).
- Lucy Hickman, "Corporate Killing Reform" (2001), 151 NLJ 912.
- Paul Matthews, "Involuntary Manslaughter: A View from the Coroner's Court" (1996), 60 Journal of Criminal Law 189.
- D. McCluskey, "Legal Update: Corporate Manslaughter" (2011.3), Law Society Gazette.
- A. McColgan,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Document on Involuntary Manslaughter - Heralding Corporate liability?", [1994] Crim LR 547.
- News, "DPP Backs Campaign for 'Corporate Killing' Law" (2000), 144 Solicitors Journal 433.
- News, "Straw Unveils Corporate Killing Plans", 144 Solicitors Journal 481.
- News, "Corporate Killing Plans 'Laudable But Flawed'" (2000), 144 Solocitors Journal 1111.
- News, "Dismore Calls for New Offence of 'Corporate Homicide'" (2000), 144 Solocitours Journal 407.
- News, "No-Go for Corporate Killing Law" (2002), 146 Solicitors Journal 1047.
- John Smith, "Comment on R v P.&O. European Ferries (Dover) Ltd.", [1991] CrimLR 697.
- Stephanie Trotter, "Safety and Profit" (1999), 149 NLJ 1279.
- Stephanie Trotter, "The Padding ton Rail Crash" (1999), 149 NLJ 1505.

Stephanie Trotter, “Corporate Manslaughter” (2000), 150 NLJ 454.

Helen Walker, “Criminalising Companies-Will Corporate Killing Make a Difference” (2001), 151 NLJ 1494.

Celia Wells, “Law Commission on Involuntary Manslaughter: (2) The Corporate Manslaughter Proposals: Pragmatism, Paradox and Peninsurity”, [1996] CrimLR 545.

David Wenham, “Recent Developments in Corporate Homicide” (2000), 29 Industrial Law Journal 378.

〈기타〉

법무부, “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2014.6.3. 법무부 보도자료.

대검찰청, 기업책임법 도입 제안서.

http://www.gjdream.com/v2/print_form.html?news_type=201&no=460690
2014.11.17. 최종검색.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35> 2014.11.17. 최종
검색.

<http://laborhealth.or.kr/30600> 2014.11.20. 최종검색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107_11/ 2014.11.20. 최종검색.

<http://www.bbc.co.uk/news/uk-england-manchester-13993270> 2014.11.20. 최종검색.

<http://www.lawgazette.co.uk/in-practice/practice-points/corporate-manslaughter>
2014.11.20. 최종검색.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2014.11.20.
최종검색.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61> 2014.11.21. 최종
검색.

A Review and Implication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Kim, Jae-Yo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specially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Engl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s a concept that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Corporations initially were not considered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because they had “neither a soul to damn nor body to kick.” Corporations could not form the mens rea needed for criminal conduct and, as a legal fiction, they could not be imprisoned.

But the number of corporations has expanded dramatically over the last century. In recent years it appear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f corporations has moved towards the true legal position: that the corporation is a free-standing entity, distinct from the people who manage and control it. With this perception has come an expectation that a corporation might properly be regarded as culpable in criminal law separately from its directors for deaths, breache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Bu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s not admitted until now in South Korean Penal Code. For this reason, the Sewol ferry owned corporation could not be claimed criminal liability for the Sewol ferry tragedy, in which 304 innocent passengers, including young students on a school trip, lost their lives.

The pressure for the imposition of criminal liability has focused specifically on the issue of punishing companies for manslaughter in England. In England, the various disasters, each with large loss of life – in particular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disaster and various rail crashes (Southall, Paddington) - have all prompted calls for new legislation fixing the corporation with corporate liability.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seeks to meet these demands, and imposes liability for manslaughter on ‘organisations’. And in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is now under discussion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is article provides the author reader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omparative approach for corporate manslaughter and refers to significant cases as well as the measures that can admit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reexamining many of the principle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lthough some favor this comparative approach and others find deficiencies, it is clear that there will be new arguments arising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manslaughter in South Korean Penal Cod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legislature will reconsider how best to deter corporate crime.

❖ Keyword: Corporate Killing, Corporate Manslaughter,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Vicarious Liability, Principle of Identification, Principle of Aggregation